

일학습병행제와 타 정부지원사업과의 관계정립 안내

<16.5.23(월). 일학습운영팀>

1 배 경

- 고용부에서 주관하는 사업과 일학습병행제와의 관계는 정립이 되어 안내(2015.5.29.)가 되었으나, 그 외의 정부지원사업(지자체 포함)을 포괄하는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문화 되지 않아
- 이와 관련한 대외 문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

[주요 문의 사항]

- ▶ 타 정부지원 사업 참여 중인 자가 일학습병행제를 병행할 수 있는지?
- ▶ 병행이 가능할 경우 정부지원금의 중복 지원 여부?

⇒ 따라서, 현장의 혼란을 조기에 방지하기 위하여 일학습병행제와의 타 정부지원사업과의 포괄적 관계 정립 기준을 마련하여 시달할 필요가 있음.

2 기 준

□ 학습근로자의 타 정부지원사업 중복 참여 가능 여부



구분	대상	가능 여부 및 조건
훈련 관련 사업	실업자 대상 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복 참여 불가 ※ 학습근로자는 근로자 신분이므로 실업자를 대상으로 한 훈련의 수혜자가 될 수 없음.
	재직자 대상 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복 참여 가능하나 - 일학습병행제 훈련기간 중 훈련 근로시간(일학습병행제 훈련시간 + 근로시간)이 훈련시간의 2배 이상인 경우에 허용* * 예) 훈련시간이 600시간인 경우, 동 기간 동안의 훈련 근로시간은 1,200시간 이상이 되어야 함. [신규고용지원 사업과의 관계 정립 준용(15.5.29)] - 타 정부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자의 근로형태가 해당 정부지원사업 기간 중 단시간근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경우 ※ 해당 단시간근로 형태로 고정되지 않고, 전일제(full-time)로 전환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일학습병행제 중복 참여 가능 [신규고용지원 사업과의 관계 정립 준용(15.5.29)] - 또한, 중복참여가 허용된 경우에도 일학습병행제 훈련 시간과 타 훈련 시간이 겹칠 경우 부정 훈련에 해당됨.



구분	대상	가능 여부 및 조건
훈련 무관 사업	실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재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훈련과 무관하므로 중복 참여가 가능하되, - 일학습병행제 훈련기간 중 훈련 근로시간(일학습병행제 훈련시간 + 근로시간)이 훈련시간의 2배 이상인 경우에 허용* * 예) 훈련시간이 600시간인 경우, 동 기간 동안의 훈련 근로시간은 1,200시간 이상이 되어야 함. [신규고용지원 사업과의 관계 정립 준용(15.5.29)] - 타 정부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자의 근로형태가 해당 정부지원사업 기간 중 단시간근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경우 ※ 해당 단시간근로 형태로 고정되지 않고, 전일제(full-time)로 전환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일학습병행제 참여 가능 [신규고용지원 사업과의 관계 정립 준용(15.5.29)]

□ 타 정부지원사업 중복 참여가 가능한 경우 지원금의 중복 지원 여부

- 임금(인건비) 보전성 지원금의 경우, 일학습병행제 「학습근로자 훈련지원금」 과 중복지급이 불가능하므로 기업이 지원금 선택



구분	지원금 선택
타 사업의 임금 보전성 지원이 없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근로자훈련지원금 지급
타 사업의 임금 보전성 지원이 있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사업의 지원금과 학습근로자훈련지원금 중 기업이 선택 * 지부지사는 기업으로부터 타 사업의 사업기간(종료일 포함), 지원 받고자 하는 지원금 정보를 포함한 공문 접수 - 타 사업의 지원금을 선택할 경우 해당 사업의 사업 기간 동안 학습근로자훈련지원금은 미 지급 [신규고용지원 사업과의 관계 준용(15.5.29)]

◆ 기 시달된 타 사업과의 관계 정립 내용 : [참고 : 1~2]

[참고 1]

일학습병행제와 신규고용지원사업 등과의 관계정립 안내

<15.5.29(월). 공단 일학습지원국>

1 배 경

- 고용부에서 주관하는 신규고용지원사업(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고용촉진 지원금 : 붙임참조)과의 관계에 대한 대외 문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

[주요 문의 사항]

- ▶ 신규고용지원사업 대상자가 일학습병행제를 병행할 수 있는지?
- ▶ 병행이 가능할 경우 정부지원금의 중복 여부는?

⇒ 따라서, 현장의 혼란을 조기에 방지하기 위하여 신규고용지원사업과 일학습병행제와의 관계 정립 기준을 마련하여 시달할 필요가 있음.

2 문 제 점

- (고용지원사업)신규고용지원사업과 일학습병행제간의 관계 정립 없이 해당 사업들이 동일 홍보 틀을 통해 소개됨에 따라
 - 현장에서는 동 사업들의 중복 참여가능 여부에 대한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 조기에 동 명확한 기준 정립 없이 동 사업들이 진행되고, 추후 기준이 정립될 경우 청년인턴제도와 일학습병행제와의 관계에서 중복지원 문제가 발생한 것처럼 동일한 사태 재발이 우려됨.

3 결 정 사 항

□ 신규고용지원사업

<1>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

- 일학습병행제 중복 참여를 허용하되, 아래의 기준 모두를 만족할 경우에 한해 허용

<기 준>

구분	내 용
근로시간과 훈련시간 관계	▶ 훈련근로시간이 일학습병행 훈련시간의 2배 이상 * 훈련시간이 600시간인 경우, 훈련근로시간 1,200시간 이상
지원	▶ 시간선택제 근로자 임금보전성 지원금(임금, 임금인상액)과 일학습병행제 학습근로자 훈련 지원금 중 <u>사업주 선택에 따라 지급</u> * 청년인턴에서 일학습병행제 학습근로자(무기계약직, 정규직)로 전환한 경우 기업에 지원되는 정규직전환 지원금과 학습근로자 훈련 지원금과의 관계와 동일하게 적용
전일제(full-time) 전환	▶ 해당 근로자의 근로형태가 단시간근로 형태로 고정되지 않고, 전일제(full-time)로 전환 가능한 경우

<2>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 일학습병행제 중복 참여를 허용하되, 아래의 기준 모두를 만족할 경우에 한해 허용

<기 준>

구분	내 용
근로시간과 훈련시간 관계	▶ 훈련근로시간이 일학습병행 훈련시간의 2배 이상 * 훈련시간이 600시간인 경우, 훈련근로시간 1,200시간 이상
지원	▶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대상 근로자 임금보전성 지원금(인건비 지원액)과 일학습병행제 학습근로자 훈련 지원금 중 <u>사업주 선택에 따라 지급</u> * 청년인턴에서 일학습병행제 학습근로자(무기계약직, 정규직)로 전환한 경우 기업에 지원되는 정규직전환 지원금과 학습근로자 훈련 지원금과의 관계와 동일하게 적용

※ 동 제도 도입 이후 임금이 감소된 기존근로자가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할 경우, 동 제도에 따른 보전임금 지원금(30만원 한도)과 학습근로자 훈련지원금 중 사업주 선택에 따라 지급

<3> 고용촉진 지원금

- 고용촉진 지원금 대상 근로자의 일학습병행제 중복 참여를 허용하되, 동 제도 하에서의 임금보전성의 지원금액(연 600만원~900만원)과 일학습병행제 학습근로자 훈련 지원금과의 관계에서
 - 임금보전성의 지원금액(연 600만원~900만원)과 학습근로자 훈련지원금 중 사업주 선택에 따라 지급

<붙임>

신규 고용지원사업 안내문(고용지원센터)

1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

○ 지원대상 :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기존 근로자를 시제로 전환 또는 근로조건 개선 시

구분	신규제용	시간선택제 전환	근로조건 개선
기업규모	제한없음(우선지원 대상기업 우대)	제한없음(중소·중견기업 우대)	중소·중견기업
실행대상	실업자(전직자 포함)	고용기간 6개월 이상, 주 소정 근로시간 30시간 이상인 근로자	고용기간 6개월 이상인 기간제인 시제 근로자
임금수준	- 최저임금 120~130%(우선지원 기업) - 최저임금 130%(모든기업)	근로시간비례 원칙 준수 (전환 후 시간당 임금이 전환 전 수준 이상)	개선 후 최저임금 120% 이상
지원수준	- (우선지원 기업) 매월 임금의 1/2, 80만원 한도+10만원 1년간 지원 * 120~130% 승인시 40만원 한도+10만원 - (대규모 기업) 매월 임금의 1/2, 60만원 한도 1년간 지원	- 매월 임금 인상액의 1/2, 50만원 한도 1년간 지원 * 중소·중견기업 월 20만원 추가지원 - 대체인력 채용시 매월 임금의 1/2, 60만원(대규모 30만원) 한도	매월 임금 상승분의 1/2 60만원 한도 1년간 지원
근로계약 근로시간	무기계약, 주 15~30시간	전환 후 주 15~30시간 근로자	무기계약, 주 15시간~30시간

2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 지원대상 : 교대제 도입 및 개편, 실근로시간 단축, 일자리순환제 등을 도입하여 근로자수가 제도 도입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근로자수를 **초과한 경우** 인건비, 설비투자비 등을 지원

○ 인건비 지원 금액 및 기간

구분	지원기간	회차별 지원액 (3개월 단위)	총지원액
비제조업	1년	180만원	720만원
제조업	대규모 기업	225만원	900만원
	우선지원대상기업	270만원	2,160만원

○ 설비투자비 지원 : 최대 2억(증가근로자 수 1명당 500만원, 총 투자비의 1/3범위 내)

○ 설비투자비 용자 : 최대 50억 지원(투자 소요비용 2/3 범위 내)

* 설비투자비 : 생산활동에 직접 관련된 기계, 기구, 사무기구, 안전설비 등에 투자한 비용

○ 기존근로자 임금보전지원 : 제도 도입 후 **임금이 감소된 기존근로자**에게 사업주가 감소임금 1/40이상 보전한 경우 근로자 1인당 최대 30만원(보전임금의 1/20내) 지원

★ 단, 설비투자비 및 임금감소 근로자 임금보전지원은 교대제 개편 및 실근로시간단축제한 해당

3 고용촉진 지원금

○ 지원대상 :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자를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고용한 사업주

○ 지원금액 : 근로자에게 지급한 월 통상임금에 따라 연 600만원~900만원

○ 지원기간 : 1년(3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3개월 단위로 지원)

[참고 2]

청년인턴제, 취업성공패키지 등 사업과 일학습병행제와의 관계 정립

<'14.8.8 고용부 일학습병행지원팀>

❖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및 학습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청년인턴제 및 취업성공패키지·고용안정사업 등 관련 사업과의 관계 및 중복지원 등에 대한 세부 기준 마련 필요

1 청년인턴제 관련 일학습병행제 지원기준

□ 청년인턴제 참여자의 일학습병행제 참여 가능 여부

○ 일학습병행제 훈련기간은 최소 1년~최대 4년이고 이에 따라 훈련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므로, 참여기간이 최대 6개월인 청년인턴제 참여자는 인턴기간 중에 일학습병행제 참여 불가

* 청년인턴제 인턴기간은 최대3개월(100인 이상)~최대6개월(50인 미만)

○ 인턴기간 종료 이후에는 일학습병행제 참여가 가능하나, 단기 계약 형태의 청년인턴 참여 후, 다시 기간제 학습근로자가 되는 것을 지위를 지나치게 불안하게 하므로, 청년인턴제를 거친 자를 학습근로자로 채용하는 기업은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만 지원

* 청년인턴으로 사용한 자를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학습근로자로 인정 불가

□ 사업주가 청년인턴 정규직 전환 기업지원금과 학습근로자 채용지원금을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는 지 여부

○ 두 지원금은 같은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유사 성격의 (채용)지원금이므로, 동시에 (인턴제)정규직 전환 지원금과 (일학습병행제)학습근로자 채용지원금을 지원받을 수는 없음

○ 다만, 청년인턴제 정규직 전환 지원금 지원기간이 종료된 시점부터는 학습근로자 채용지원금 지원이 가능

* 청년인턴기간(3~6월)→정규직전환(전환지원금 지원,6월)→정규직전환지원금 지원종료
(일학습병행참여불가) (일학습병행 참여가능, 학습근로자 채용지원금은 지원불가) (학습근로자 채용지원금 지원가능)

- 청년인턴참여자에게 지원하는 취업지원금(90~110만원, 2회)과 학습근로자 채용지원금이 동시에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
 - 청년인턴 취업지원금은 제조업 등 **특정직종 참여자(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인센티브 성격인 반면,
 - 학습근로자 채용지원금은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채용장려금 성격으로 **지급대상 및 목적이 달라** 중복지원이라 볼 수 없음

2 취업성공패키지(근로자지원) 및 고용안정사업(사업주지원) 과의 중복지원 문제

◇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각종 수당(지원금)과 학습근로자 채용지원금은 동시에 지원이 가능하나,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각종 지원금(고용안정사업 등)은 학습근로자 채용지원금과 동시 지원 불가

-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성공수당과 학습근로자 채용지원금은 동시에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
 -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성공수당(최대100만원)**은 취업목표를 달성한 **참여자(학습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 인센티브 성격인 반면,
 - 학습근로자 **채용지원금**은 근로자가 일과 학습을 병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생산성 저하를 보전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채용장려금** 성격이므로, 두 지원금은 **지급대상 및 성격이 상이하고 동시 지원이 가능**
- 사업주가 각종 **고용안정사업 지원금(고용촉진지원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 일학습병행제 **학습근로자 채용지원금 지원 가능여부**
 - 두 지원금은 모두 (학습)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채용장려금 성격의 지원이므로 **동시에 지원은 불가하며, 사업주가 하나의 지원금만을 선택하여 지원 신청**
 - * 다만, 고용안정사업 지원금 지급기간이 종료된 학습근로자에 대하여는 일학습병행제 학습근로자 채용지원금 지원이 가능